

남북교류협력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

2025년 8월 7일(목)
(사)통일문화네트워크(GNPSP)¹⁾

1. (민간단체의 지원 아이디어 존중)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교류 및 개발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북한과 협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.

※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4항, “협력사업”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, 경제, 통계, 학술, 과학기술, 정보통신, 문화, 체육, 관광, 보건의료, 방역, 교통, 농림축산,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 -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개인 및 민간단체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.

2. (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)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펀드를 형성해야 한다.

※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관한 민간단체와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남북협력기금이 활용되어야 함.

※ 민간단체 70% 이상이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, 경상북도에는 1개의 단체만 존재하는 불균형

3. (남북한 공존·공영) 통일부는 한반도 민족공동체의 생명권을 보호하고, 공존·공영을 위하는 영역에 대해서 남북한 협력을 이뤄야 한다.

※ 통일부 통일의 철학(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)과 통일의 과정 1단계인 화해 협력 단계

※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

4. (유엔 제재 해결 및 지원의 가이드라인 제시) 통일부는 현 북한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사회 환경을 개선(유엔 제재)하며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 방향을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민간단체에 제시해야 한다.

※ 통일부가 북한의 현실에 맞지 않는 합의서 요구

※ 미국과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필요 - 타 부처와의 협력

질문 사항) (지원을 위한 송금 및 위탁 문제) 민간단체가 한국 기업에 위탁하여 그 한국 기업의 중국 파트너사가 북한에 보낼 물건을 구매 및 배송하는 시스템은 합법한가?

1) (사)통일문화네트워크는 현재 세계보건기구(WHO) 내 Non-State Actor로서 WHO GSPN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, GHSA의 회원인 GHSAC의 멤버로 현재 법제적준비팀(Legal Preparedness Action Package)에서 활동 중임.